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9-13
----------	--------

제출일자 : 1999. 3. 9.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이유

-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례로 운용함으로써 기구·정원 조정시 각종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낭비 및 의회조례 심의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 행정조직운용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골자

○ 폐지조례

- 가. 거창군보건소조례
- 나.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 다. 거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 라.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 마. 거창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

개정근거

- 경남도 행정 12200 ~ 42 ('98. 10. 20) 조례·규칙모델표준안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 청

제3조 (부군수) ①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둔다.

- ② 부군수는 다음사무를 관장한다
1. 군 행정사무의 총괄
 2.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
 3. 기타 군수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실·과의 설치)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

- ② 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 군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통제

- 나. 예산편성 운영 및 재정운영 총괄
- 다. 군 행정의 감사 및 직무감찰
- 라. 법제, 소송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마. 경영행정에 관한 사항
- 2. 문화공보실장
 - 가. 공보계획의 수립·시행
 - 나. 문화 및 예술에 관한 사항
 - 다. 체육진흥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 3. 종합민원실장
 - 가. 민원업무의 총괄 관리
 - 나. 지적공부 및 건축물관리대장 보존관리
 - 다.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정리
 - 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및 부동산에 관한 업무
 - 마. 생활현장 민원 처리
- 4. 내무과장
 - 가. 행정구역에 관한사항
 - 나. 직제·정원·인사에 관한 사항
 - 다. 선거 및 국민투표
 - 라. 공무원의 교양과 복리
 - 마. 행정정보화 및 행정통신 현대화 추진
 - 바. 민방위 및 병무에 관한 사항
 - 사.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사회진흥운동에 관한 사항
 - 아. 거창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 5. 재무과장
 - 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
 - 나.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 다.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 6. 사회복지과장
 - 가. 생활보호대상자 및 어려운 군민 구호, 생계지원 총괄
 - 나. 가정복지 행정의 종합
 - 다. 여성복지 행정의 종합
 - 라. 민·관 자원봉사업무 총괄
 - 마. 위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산업과장

- 가. 농업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 나.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다.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 라. 원예 및 특용작물의 증산 장려
- 마. 축산업 육성 및 축산물 위생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과장

- 가.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나. 중소기업 및 노동에 관한 사항
- 다. 지역 산품의 시장개척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 라. 광공업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 마.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9. 산림과장

- 가. 치산 및 생활주변 녹화 계획의 수립 실시
- 나.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 다. 산림보호 및 야생조수 보호

10. 건설과장

- 가. 군 건설의 종합계획 수립 추진
- 나. 재난 종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 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 라. 도로·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11. 도시환경과장

- 가. 국토이용 및 도시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 나. 관광 및 온천 개발에 관한 사항
-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 라.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제 3 장 직 속 기 관

제1절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제5조 (설치) ① 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 ②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6조 (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 (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 나병, 성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 ③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8조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어촌등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수수료 등) ① 보건소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진료비 또는 보건진료소 진료수는 별도 조례로서 정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 (설치) 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59-19번지에 둔다.

제11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식량작물,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6. 양축기술 및 영농기계화, 환경농업기술지도
7.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8. 농민교육 및 지도
9.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4 장 사 업 소

제13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2와 같다.

제14조 (목적) ① 수도사업소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 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계층의 자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③ 수송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는 수송대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 자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15조 (소장 등) 사업소에는 소장 또는 관장을 두며, 소장 또는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 (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또는 관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창군수도사업소장

- 가.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나.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
- 다. 상·하수도 요금의 부과 및 징수
- 라.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의 관리
- 마. 상·하수도 기본계획 및 재정비
- 바.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 사. 상수도, 간이상수도 및 하수 처리의 수질검사 관리
- 아. 먹는물 관리
- 자. 상수도, 취수 및 급수 통제
- 차. 건설공사 품질 실험실 운영
- 카. 기타 상·하수도사업 등 물관리에 관한 사항

2.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장

- 가. 저소득 세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업훈련
- 나. 결손, 빈곤 가정의 가정문제 상담
- 다. 부녀자의 교양교육, 취미교실 운영등 건전가정 육성사업
- 라. 어린이 기능교실, 예절교실, 심신 단련등 건전한 성장발달 도모사업
- 마. 청소년 문제의 상담, 교양교육, 레크레이션 등 전인적 인격형성 유도
- 바. 청소년 기능교육, 취미교육, 독서실 운영 및 사회교육
- 사. 노인 사회교육 및 건전한 여가지도
- 아. 심신장애인 상담 및 서비스 사업
- 자. 주민 사회교육 및 각종회의 행사, 여가선용시설 제공
- 차.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원 봉사자 육성
- 카. 기타 사회복지를 위한 종합서비스 업무

3.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장

- 가. 수승대국민관광지 관리 및 운영
- 나. 주변 자연경관보호 및 관광자원 관리
- 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 라. 위천천 상류지역 수질오염 방지
- 마. 기타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시설 사용료 등) ① 전항에 규정된 사업소등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읍·면

제18조 (설치) ①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9조 (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행정리·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0조 (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하부조직 등

제21조 (하부조직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하부조직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를 폐지한다.

1. 거창군보건소조례
2.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3. 거창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4.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5. 거창군수도사업소설치조례

[별표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5조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거창군 보건소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21번지	거창군 일원
주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주상면 도평리 711번지	주상면 일원
웅양면 보건지소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217-11번지	웅양면 일원
고제면 보건지소	거창군 고제면 농산리 200-1번지	고제면 일원
북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391-3번지	북상면 일원
위천면 보건지소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03-3번지	위천면 일원
마리면 보건지소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247-4번지	마리면 일원
남상면 보건지소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631-4번지	남상면 일원
신원면 보건지소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187-5번지	신원면 일원
가조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342-8번지	가조면 일원
가북면 보건지소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877-3번지	가북면 일원
거기1구 보건진료소	거창군 주상면 거기리 87-10	거기1·2·3구, 남산 1·2·3구
강천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산포리 1418-2	산포, 석정, 우량, 강천, 금광, 어인
아주 보건진료소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292-11	용전, 군암, 송산, 아주, 한기, 신촌, 왕암, 오산, 장지
구송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571	답선, 원기, 원봉계, 외룡, 용초, 구송, 둔기
개명1구 보건진료소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621-1	개명 1,2구, 수내, 손항, 온곡
소정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소정리 239-6	중산, 소정, 개삼
월성 보건진료소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1083-8	산수, 월성, 내계, 황점
모전 보건진료소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726-3	모전, 석동, 원당, 무월, 당산
고학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고학리 1130-5	병항, 고신, 고대, 상촌
율리 보건진료소	거창군 마리면 율 리 176-1	풍계, 상율
임불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983-1	임불, 남불, 월포
진목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상면 진목리 155	춘전, 진목, 남진
지산 보건진료소	거창군 남하면 지산리 906-4	자하, 신기, 장전, 천동, 대사, 오가
대현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970	내외탐, 소야, 대현, 비곡
양지 보건진료소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262-1	원동, 양지, 수옥, 저전, 감악, 구사, 신기
대학동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조면 도리 1221	대학동, 화곡, 도산당, 녹동
내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몽석리 197-3	몽석, 내촌, 송정, 용암, 개금
중촌 보건진료소	거창군 가북면 중촌리 1872-1	심방, 회남, 중촌, 추동

[별표2]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3조관련)

사업소명	위치
거창군수도사업소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
거창군종합사회복지관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333-2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750-3